

2023 하계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공지사항

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<학생 절차>

1. 학생이 실습할 기관 선정할 것 (복지부 인증기관 확인할 것)
2. 실습 기관이 결정되면(기관에서 수락하면) 첨부파일인 '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'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직접 제출할 것
3. 사전교육(23.06.01)을 반드시 들을 것 (불참 시 학점인정 불가)
4. 학과사무실에서 기관 공문 발송 안내 확인 후, 기관에 공문 발송 확인할 것

<학과사무실 절차>

1. 학생이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으로 공문을 보냄
2. 학과사무실 측에서 공문 보낸 후 학생에게 DU TALK(디유크)을 통해 공문 발송 완료 안내

- 실습기관 및 실습시간 등 실습 관련 규정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선정하고 수업을 들을 것.
- 기관 선택 시 추천 기관 리스트 참고해서 결정할 것. 복지부 선정기관인지 꼭 확인할 것.
- 기관 선택 시 지역아동센터는 피할 것.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할 경우 이유를 제시.
 - 센터 중 식사비 받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보고되고, 불성실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며, 다양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경험하기에는 규모가 작아 실습 기관으로 추천하지 않음.
- 선수과목: 사회복지학개론, 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사례관리 중 최소 2과목, 선수과목 미이수자는 실습담당 교수 상담 후 실습 결정할 것.
- 실습참가생 대상으로 실습 사전교육(OT) 참석 필수(참석하지 않을 시, 학점인정 불가)
- 실습일지 및 관련 자료 미제출시 학점 인정이 안 됨.
- 실습 무효 조항(18조)을 참고하여 실습에 임할 것.

제18조(실습의 무효) 현장실습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현장실습은 무효처리 된다.

1. 기관의 실습계획에 따르지 않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킨 경우
2. 실습기간의 1/4 이상 결근하였을 경우
3. 실습장소를 임의로 바꾸거나 이탈한 경우
4. 실습기관을 지정받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실습을 거부한 경우

-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운영하였던 사회복지현장실습등록제는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으로 2020년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운영할 모든 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.
- 보건복지부장관 실습기관 선정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(<http://lic.welfare.net/Index.action>)의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.
- 희망기관에 문의 전화를 할 때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